

회원종목단체 운영 지원 및 경기력향상을 위한 지원규정

제정 2021.09.24.

개정 2022.06.09.

개정 2023.05.19.

개정 2024.02.16.

개정 2025.02.14.

개정 2025.04.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매년 개최되는 동·하계전국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각종 전국 규모대회에서 우수한 성과와 경기인구확대 및 상위입상을 위한 종목단체 및 각급팀에게 지원되는 훈련비 등과 체육 행정 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본회 회원종목단체, 체전참가 도 대표팀, 각 실업팀 및 대학팀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제3조(지원기준) 각 지원대상의 지원비는 [별표 1]에 책정된 기준에 따라 지원하며 지원항목 중 [별표 1]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경기력향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한다.

제4조(지원항목) 전국(동·하계)체전 대비 기본훈련비, 팀 창단 지원비, 종목별 특수장비구매비, 강화훈련비, 전국체전 예선대회비, 정책지원비, 종목단체(전무이사 활동 지원 포함)행정보조비 등을 지원한다.

제5조(지원절차) 각종 훈련비, 예선대회비 등은 해당 종목단체 또는 실업팀의 요구에 의해 사무처 해당 부서에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지원하며,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부 칙 (2021.09.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체육회가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로 본다.

부 칙 (2022.06.0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05.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02.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02.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04.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개정 2024.02.16., 2025.02.14. 2025.04.30.>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지 급 액	비 고
전국(동·하계) 체전대비 기본훈련비	지원일수(30일) (1인 1일 24,000원/훈련비 지원)	720,000원	
전국체전 예선대회비	규모, 참가인원, 대회 일수 등에 따라 차등지원	300,000 ~ 10,000,000원	
종목단체 행정지원비	- 종목단체 조직강화 및 육성 지원 - 운영비 - 전무이사 활동비	<운영비(월)> 육상 1,000,000원 게이트볼 500,000원 기타종목 400,000원 <전무이사활동비(월)> 정회원 500,000원 준회원 400,000원	
팀 창 단 지 원	- 경기인구 저변 확대와 꿈나무 양성을 위한 신생팀 창단 - 단, 대학은 체육특기자 전형을 통해 학생선수를 선발 및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에 가입된 대학의 운동부창단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초·중학교 2,000,000원 고등학교 3,000,000원 대학교 5,000,000원 일반부 10,000,000원	○일반부 (시·군청 직장운동경 기부 제외)

※ 단,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액은 조정할 수 있음.